

약관 변경 수시 공시

1. 대상투자신탁 : **Tops Multi-Asset 채권투자신탁 1호**
2. 변경 내용 : 자산운용회사 보수율 인하 (0.20% → 0.15%)
3. 변경내용 대비표

현 행	변 경
<p>제 40 조(투자신탁보수)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2.0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0 3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4 	<p>제 40 조(투자신탁보수)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.5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0 3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4

4. 변경 시행일 : 2005. 7. 6.

조흥투자신탁운용(주)